

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7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년 8월 14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개선 등 행정자치부의 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 개정(15.12.24)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시금고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정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을 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정함(안 제1조).
- 나.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하도록 함(안 제2조제1호).
- 다. 시장이 반기별로 금고로부터 보고받도록 하는 내용에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추가함(안 제17조).
- 라. 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(행자부 예규 제30호, '15.12.24)의 내용을 반영하여 적정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함(안 별표 1, 별표 2).
- 마.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 등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2조, 제3조, 제7조, 제9조, 제12조, 제15조, 제17조, 별표 1, 별표 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회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협의사항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원안 동의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협의 완료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 제외
- (4) 여성정책담당관(성별영향분석평가): 원안 동의
- (5) 갈등조정담당관(갈등영향분석평가): 원안 동의
- (6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
실·본부·국 협의 사항: 해당사항 없음.

라. 기 타

- (1) 입법예고(2017. 5. 18. ~ 2017. 6. 7.)결과: 의견 없음.
- (2) 신·구 조문 대비표: 별도 붙임
- (3) 비용추계 등 자료: 별도 붙임

※ 작성자 : 재무과 지출팀 나주희 (☎ 2133 - 3228)

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 및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102조”를 “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”를 “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지방 직영기업”을 “지방직영기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금융기관중”을 “금융기관 중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금고 지정”을 “금고지정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[별표 1] 및 [별표 2]”를 “별표 1 및 별표 2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따른 수의방법에 따라 금고”를 “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”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시와 협력사업 추진 능력”을 “시와의 협력사업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9명이상”을 “9명 이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행정(1)부시장”을 “행정1부시장”으로, “자”를 “사람”

으로, “과반수 이상이”를 “과반수가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3급 이상”을 “3급 이상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운영중”을 “운영 중”으로, “제출받기”를 “제출 받기”로 한다.

제15조제3항 중 “변경시”를 “변경 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운영중”을 “운영 중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금고은행이”를 각각 “금고가”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상황 및 금고은행”을 “상황, 금고”로, “평가보고 등”을 “평가보고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출요구가 있을 시”를 “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”로 한다.

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평가항목	평가 세부항목	배점
4. 금고업무 관리능력		25
	가.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	(5)
	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	(7)
	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※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. 수납시스템(OCR센터, ETAX 등) 구축. 운영능력 및 계획	(7) (6)
5.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		9
	가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.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※ “지역사회에 대한 기여”는 ‘실적’으로만 평가, “시와의 협력사업”은 ‘계획’으로만 평가	(5) (4)

[별표 2]

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(제7조제1항 관련)

I. 일반원칙

1. 평가 세부항목별 점수 부여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차감하여 평가하고, 필요시 평가대상 금융기관을 등급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.
2. 평가 세부항목별(1- 가,나의 경우는 평가 세세부 항목별)로 대상 금융기관이 부여 받는 최소 점수는 배점상한의 60% 이상으로 하고,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배점상한의 최대 10%에서 최소 4%의 비율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. 다만, 평가항목 2(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)와 평가항목 5(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)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서 적용되는 비율의 1/2을 적용해야 한다.

II.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

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(30점)

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(10점)

- 평가기준 :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·평가

※ 단, 지역조합은 국내 신용조사 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 가능

○ 평가방법

-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,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·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 (20점)

-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·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,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·확인

○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

- 총자본비율 (안정성, 7점)

※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(안정성 7점)로 평가

- 고정이하여신비율 (건전성, 7점)

- 자기자본이익율 (수익성, 6점)

※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(신협, 농수산림조합, 새마을금고 등)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 (금융감독원, 새마을금고중앙회 등)의 기준을 따름

※ 금융감독원,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

2.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(18점)

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 (6점)

○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나. 공금예금 적용금리 (5점)

○ 보통예금 및 MMDA 운용 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다. 자치단체 대출금리 (4점)

○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·평가한 후,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라.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(3점)

○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3. 시민의 이용 편의성 (18점)

가. 관내 지점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(5점)

○ 시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시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·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※ 단,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“관내 지점 수”에서 제외

나.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(6점)

○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다.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(7점)

-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,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(전자납부 등) 증진 방안,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4. 금고업무 관리능력 (25점)

가.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(5점)

-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·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(7점)

-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(7점)

- 전산보안시스템(H/W, S/W)의 도입 및 운영 방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라. 수납시스템(OCR센터, ETAX 등) 구축·운영능력 및 계획 (6점)

- OCR센터, ETAX 등 수납시스템 구축·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5.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(9점)

가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(5점)

-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, 재해구호 및 지역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나.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(4점)

- 출연금을 기준으로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

※ II-3, 4의 지방세에는 세외수입을 포함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 및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10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금고”란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, 각종 세입금의 수납,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의 금융기관을 말한다.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“특별회계”란 「지방공기업법」에 의한 지방 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.</p> <p>4. (생략)</p> <p>5. “금고지정”이란 금융기관중 시의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----- --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 지방직영기업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금융기관 중 -----</p>

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.

6. (생략)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시의 일반 회계·특별회계,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하며,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7조(금고지정 평가기준) ① 공개경쟁 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은 [별표 1] 및 [별표 2]와 같다.

② 제6조 단서에 다른 수의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.

1. ~ 4. (생략)
5.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

제9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(1)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,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.

1. 2. (생략)
3.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

-----.

6. (현행과 같음)

제3조(적용범위) -----
----- 금고지정 -----

-----.

제7조(금고지정 평가기준) ① -----

----- 별표 1 및 별표 2 -----
-.

② -----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 -----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----- 시와의 협력사업

제9조(위원회 구성) ① -----
----- 9명 이상 -----
-----.

② ----- 행정 1부시장 -----
----- 사람 -----

- 과반수가 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3. ----- 3급 이상 -----

③ ~ ⑤ (생략)

제12조(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) ① 시장은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기존에 운영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금고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울시보 등에 공고해야 하고,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금융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15조(금고약정) ①、② (생략)

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할 업무, 각종 법령、조례、규칙의 준수 의무,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, 일시차입 및 기채, 배상 및 변상책임, 비용 부담 및 수수료, 약정의 해지, 약정서 조문해석, 금고 변경시 이행사항,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④ 시장이 기존에 운영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새로운 약정이 체결될 때까지 금고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⑤ 금고은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는 새로운 금고은행이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) ① -----
----- 운영 중 -----

----- 제출 받기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금고약정) ①、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변경 시 -----

-----.

④ ----- 운영 중 -----

-----.

⑤ 금고가 -----
----- 금고가 -----

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7조(금고운용 보고) ① 시장은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일반·특별회계 및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년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.

-----.

제17조(금고운용 보고) ① -----

상황, 금고----- 평가보고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-----
-----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(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)

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행정자치부의 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」 개정('15.12.24)에 따라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으로 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음.

4. 작성자 : 재무국 재무과 나주희(2133-3228)